

조현중 특허법 OX문제집 정오표

순번	쪽	문제 번호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1	112	2	/해설/ 6개월이 아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(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).	/해설/ 6개월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(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).	오타수정